건설교통국

◇ 건 설 교 통 과

◇ 도 로 과

◇ 재 난 관 리 과

◇ 지 적 과

건설교통국 조치결과(계획) 총괄

□ 지적사항별

(단위:건)

부 서 별	지 적 사 항					수범사례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문책요구	
계	18	2	14	2		4
건설교통과	5	1	4			1
도 로 과	7	1	5	1		1
재난관리과	3		3			1
지 적 과	3		2	1		1

※ 수범사례 4건 미포함

□ 조치사항별

(단위:건)

부 서 별	조 치 결 과 (계획)				
	계	완 료	조치중	시기미도래	불 가
계	18	10	5	2	1
건설교통과	5	2		2	1
도 로 과	7	3	4		
재난관리과	3	2	1		
지 적 과	3	3			

【 건설교통과 】

목 록

□ 마석 그랜드힐 아파트앞 인도 및 횡단보도 설치

□ 월문초교앞 훼손된 칼라포장도로 보수

□ 마을버스 요금관리 철저

□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강구

□ 버스 무단정차 지도단속 철저

일련번호	NO 55

마석 그랜드힐 아파트앞 횡단보도설치

□ 지적사항

국도 46호선 화도읍 마석 그랜힐 아파트입구에 인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 및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 많은 불편과 사고위험이 존재함. 경찰서와 협조하여 모란공원앞 횡단보도를 그랜드힐 아파트 입구로 이전하여 주고, 인도 또한 조속히 설치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 : 불가

○ 2006. 02.20. : 남양주경찰서 공안협의, 경기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기술 자문

○ 2006. 05.23. : 남양주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의 상정 결과 "굽은도로 상에 경사(서울방향 15%)가 혼재되어 운전자의 시인성이 불량하여 횡단보도설치 **불가**" 결정됨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일련번호	NO 56

월문초교앞 훼손된 칼라포장도로 보수

□ 지적사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실시한 월문초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칼라포장사업이 시공 등의 문제로 인해 훼손되어 있으니, 조속히 조치하기 바라며,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학교주변 도로 교통시설물이 많이 부족해 통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니 안전시설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시정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2005. 12. 21. : 하자검사 결과 통보 (건설교통과 ⇒ 회계과)

○ 2006. 7. 26. : 어린이보호구역(장내초교 등 9개소) 내 교통안전시설(교통표지, 차선 등) 보수 완료

- 대형교통표지설치 3개소, 중소형교통표지설치 20개소, 도로중앙분리대설치 50m, 차선재도색 4.4km

○ 2006. 9. 5. : 월문초등학교 앞 적색미끄럼방지포장 하자보수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확보 및 유지관리 추진

일련번호	NO 57

마을버스 요금관리 철저

□ 지적사항

택시와 공영버스 운영관련 매년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한건의 연구용역 없이 업체의 요구에 따라, 불합리하게 요금이 인상되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추후 용역예산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요금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시기미도래

○ 마을버스 요금인상은 '05. 3. 25. 남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 4. 18.로 인상하였는바, 향후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용역을 시행하여 객관적인 요금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향후 마을버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마을버스요금 인상에 반영토록 할 계획임.

일련번호	NO 58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 지적사항

2004년도 시정 질문한 사항으로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발생하는 폐철도 부지에 대해 전남 곡성의 기차마을처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시 홍보 및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시기미도래

○ 2002년부터 폐철도부지 활용 기본방안 검토 완료하여 2004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였음.

○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폐철도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매각여부 결정(용역기간 2006. 9.-2007. 5.)

○ 우리 시 자체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 협의하고자 함.

□ 문제점 및 대책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완공되는 2008년 이후 부지 활용이 가능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활용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활용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임.

□ 향후계획

○ 2006. 12. : 자체 폐철도 활용방안 수립

○ 2007. 6.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폐철도부지 사용협약 체결

○ 2007. 9. ~ 2008. : 폐철도 부지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8. ~ 2011. : 사업시행

일련번호	NO 59

버스 무단정차 지도단속 철저

□ 지적사항

구 군도 7호선 진건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버스베이를 설치하였는데도 이곳을 통과하는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진행도로 선상에서 정차를 함으로 인해 교통체증 및 사고원인이 되고 있으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구 군도 7호선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관내를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과징금 33건 16,890천원, 과태료 21건 2,300천원을 부과하는 등 운송질서 확립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수시로 동 노선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운송질서 확립

○ 법규위반사항 적발 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여 경각심 고취

【 도 로 과 】

목 록

□ 시설공사 집행잔액 관리 철저

□ 군도6호선 개설공사 조속 추진

□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 철저

□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사업 추진 철저

□ 국도47호선 도로건설공사 조속 추진

□ 사능~호평 간 우회도로 위험요인 제거

□ 오남우회도로 조속 개설

일련번호	NO 60

시설공사 집행잔액 관리 철저

□ 지적사항

○ 시설공사 완료 후 집행 잔액을 추경예산에 삭감 반영치 않고 불용처리한 사례가 빈번하니 추후 예산을 적기에 반납하여 타 재원으로 활용토록 조치 요망.

□ 조치의견 : 시정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시설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을 조기에 파악하여 추경예산에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적기에 삭감하여 타 사업등 기타재원에 활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2005년 예산삭감 : 227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완료사업의 경우 잔여 예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추경에 삭감조치

일련번호	NO 61

군도 6호선 개설공사 조속 추진

□ 지적사항

○ 팔야산업단지가 200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이 선행하여야 하므로 군도 6호선 개설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조치중

○ 2006. 10. : 공사발주 예정

□ 문제점 및 대책

○ 현재 예산부족(26억원)으로 사업시행이 지난한 실정으로 시책추진보전금등 부족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도비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에 지속 건의

○ 2007. 10. : 공사발주(1차분)

○ 2008. 12 : 공사준공 예정

일련번호	NO 62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 철저

□ 지적사항

○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공사가 편도로 조성되어 있는바 타 거리에 버금가는 남양주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2005. 3. : 잔여구간 사업비 및 사업량 등 검토

○ 2005. 8. : 공사착공

○ 2005. 11. : 공사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확보된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완료되었으나 향후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후 조치코자 함.

일련번호	NO 63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사업 추진 철저

□ 지적사항

○ 시에서 부담할 보상비 1,000억원 상회할 것으로 판단, 민자도로의 필요성, 효용성 재검토와 화도지역 교통대책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개선방안 강구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조치중

○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 효용성 등을 검토한 타당성용역 완료(04.1.30.)

○ 보상비는 2003.1.1. 불변가 기준으로 사업시기에 맞추어 인상률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지가의 상승으로 기이 확보된 금액보다는 일부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소요사업비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재원 확보가 필요함.

□ 문제점 및 대책

○ 화도지역의 교통대책 등에 대하여는 본 도로의 종점이 국도46호선에 접속하고 있어 화도지역 주민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증가보상비에 대하여는 추자지방채 발행 예정

□ 향후계획

○ 2008. : 450억 확보(지방채 270억, 시비 180억)

○ 2008.~2010. : 증가 보상비에 대한 지방채 발행

○ 2010. : 준공예정

일련번호	NO 64

국도 47호선 도로건설공사 조속 추진

□ 지적사항

○ 국도 47호선(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가 진접택지지구 입주 전까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우리 시 의견을 제시하고 촉구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조치중

○ 2005. 11. 30. : 공사 착공

○ 2006. 08. 10. : 조기완료 건의

○ 2006. 08. 25. : 조기완료 친서 전달

※ 2011. 10. 30. : 공사 준공 예정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진접택지개발 입주 이전에 본 도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교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

일련번호	NO 65

사능~호평 간 우회도로 위험요인 제거

□ 지적사항

○ 임시개통된 사능~호평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선형 및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아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조치 바람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2005. 12. 30. : 4차선 개통

○ 임시개통 시에는 교량구간은 포장완료하고 본 차선구간의 표층포장이 완료되지 않아 본차선과 교량접속구간 단차발생으로 통행차량 불편하였으나 포장완료 시공으로 위험요인 제거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일련번호	NO 66

오남우회도로 조속 개설

□ 지적사항

○ 오남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오남우회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조치중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시행중인 오남우회도로는 사업시행자가 개설기부체납하여야 하나 시행사간 분담금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를 부담하는 (주)봉마건설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담당부서에 사업비 부담 이행 촉구토록 협의중

□ 향후계획

○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 시행사로 하여금 협약서 이행촉구 요청

【 재난관리과 】

목 록

□ 공공시설물 관리 철저

□ 하천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방안 강구

□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액 일소

일련번호	NO 67

공공시설물 관리 철저

□ 지적사항

사능천 자전거 도로 중 일부 구간에 철조망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이 잔디를 파헤치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음. 공공시설물이 개인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원상복구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하천부지 제방 둔치 내에 불특정 다수인이 개인 이익을 위해 불법농작물을 식재하여 공공시설물 파손 및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 2006년 상반기 임차장비를 동원하여 준설과 병행하여 훼손된 제방을 원상복구 및 불법 농작물을 철거하였고

○ 주민들이 불법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2006. 4월경에 안내간판을 3개소 설치하였음.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행정지도(단속, 고발 등) 실시

일련번호	NO 68

하천부지활용 생활체육시설확충방안 강구

□ 지적사항

최근 우리 시 지역은 공동주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확충이 절실한데,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하천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하천 점용허가 협의 및 국유재산용도폐지 협의 시

○ 관련법을 종합 검토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수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코자 함.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없음

일련번호	NO 69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액 일소

□ 지적사항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취소 예정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조치중

○ 2006.04.06. : 하천점용료 체납자 독촉장 발송
○ 2006.04.13. : 하천점용료 재산조회 의뢰
○ 2006.05.10. : 하천점용료 체납자 독촉장 발송(2차)
○ 2006.07.25. : 하천점용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 2006.09. :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
※ 정리실적 - 총 체납액 : 117건 29,350천원
- 징수액 : 29건 8,665천원
- 미수액 : 88건 20,685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점·사용 기간의 종료와 체납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납세의식의 결여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추적관리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향후계획

○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재산압류
○ 징수 불능한 점용료 및 소멸시효대상의 경우 감액·결손처분
○ 허가기간 만료 등 장기체납자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
○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음

【 지 적 과 】

목 록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 철저

□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 추진

일련번호	NO 70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철저

□ 지적사항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등록업소 이외에도 도로변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여 영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제도** 교육 실시(2005.12.19., 12.21.)

※ 신고포상금 제도 : 06. 1. 1.부터 기존 부동산중개법을 변경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한 제도로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50만원(예정)]

○ 2006년 상반기 불법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결과

: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66건, 과태료 14건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시 불법행위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움

○ 대 책 : 새로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 홍보강화로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등록부동산중개업자 및 중개업소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유도

□ 향후계획

○ 『가을 이사철 불법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하반기 계획 수립 시행

【부서협조】

· 불법 현수막 철거 협조 - 도 로 과

· 불법 건축물 단속 협조 - 건축녹지과

일련번호	NO 71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 지적사항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철저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 수립 추진(연중)

○ 정리실적

- 총 체납액 : 181건 5,083,297천원
- 징수실적 : 33건 414,109천원
- 미 수 액 : 148건 4,669,188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에 대해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없어 위반자의 납부 의지가 결여되어 장기간 체납사유 발생

○ 실명법 위반 사실이 즉시 드러나지 않아 재산 도피 및 고발시점이 지나는 등 체납징수에 어려움 발생

○ 개발부담금의 경우 경기 침체 및 자금 사정으로 납기 연장 및 분납을 요구하거나 회사 부도로 인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재산조회 실시하여 추가 압류 조치 및 공매 의뢰

○ 부도가 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밀 재산조회 후 무재산 판단시 결손처분

일련번호	NO 72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 추진

□ 지적사항

우리 시 지역은 화도, 수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조안면 등 당초 목적인 투기억제와는 거리가 먼데도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계획(결과) : 완료

○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우리 시 의견으로 '지정해제' 의견 제출 : 2006. 4.18.

○ 건설교통부 공고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변동 없음(2006. 5. 30.)

□ 향후계획

○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우리 시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음